

광주시 고시 제2020-587호

광주시 송정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광주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련도서는 광주시청(도시계획과, 공원정책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0. 11. 9.
광 주 시 장

- 가. 계획의 취지 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
나. 위치 및 규모 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조서와 같음
다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
○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126,033	-	126,033	100.00	
일반주거지역	-	증) 36,053	-	-	
제2종일반주거지역	-	증) 36,053	36,053	28.6	
자연녹지지역	126,033	감) 36,053	89,980	71.4	

주) 상기 용도지역 변경면적은 광주시 송정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 부지에 한함

○ 용도지역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 도 지 역		면적 (㎡)	용적률 (%)	변 경 사 유
		기정	변경			
-	송정동 산28-4번지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2종 일반주거지역	36,053	230% 이하	○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에 따른 비공원시설의 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

라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서 : “게재 생략”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